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단507395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779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단5073951 판결

전문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7.9.19.

판결선고 2017.10.17.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5,056,611원 및 그 중 85,056,343원에 대하여 2016.1.11. 부터 2016.1.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8.2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7.1.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5.7.1. 접수 제31425호로 마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5.7.10. 접수 제24324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10.10.14. 피고a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85,000,000원 등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피고 a이 2015.11.11.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6.1.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85,873,733원(원금 85,000,000원 +이자 873,7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원고는 2016.1.11. 817,39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268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부터 2016.1.31.까지는 연 12% 이고,
2016.2.1.부터 연 10% 이다.

라.한편 피고 a은 2015.7.1. 피고 b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b 앞으로 2015.7.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7.1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1)피고 a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당시 피고 a 소유의 부동산 3건에서 물적 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은 합계 216,000,000원이다.

②물적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억 원,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에 대한 금융리스 채무 21,148,000원, ㉢피고 a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c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133,677,775원 등
합계 254,725,775원이다.

(2)이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a의 채무 초과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1)먼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8,9호증,갑 11,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피고a은 이 사건 대물변제에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파주시 d 공장용지 1,645㎡ 및 위 지상 건물, 서울중구 e외 3필지 f아파트 제114동 601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2.7.16. 위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관련한 피고 a의 근저당권 대출금 채무는 740,000,000원인 사실, ③피고 a은 2015.9.22.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위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거래가액은 885,000,000원인 사실, ④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2.10.29.과 2007.8.31. 위 f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252,000,000원의 각 근저당구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관련한 피고 a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는 389,000,000원인 사실, ⑤피고a은 2015.7.20.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위 f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거래가액은 460,00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216,000,000원(885,000,000원 -740,000,000원 +460,000,000원 -389,000,000원)으로 보인다.

(2)다음으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8호증,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a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에 대하여 21,148,000원의 금융리스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a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c의 2014년도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자산총계 1,915,814,941원(유동자산 504,662,134원 + 비유동자산 1,411,152,807원), 부채총계 1,345,281,879원(단기차입금 1,202,245,946원 + 매입채무 110,183,644원 + 미지급금 23,494,131원 + 예수금 9,358,158원), 당기순이익 35,956,289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 121,148,000원(대출금 채무 100,000,000원 + 금융리스 채무 21,148,000원)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로 주장하는 2014년도 표준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합계 133,677,775원은 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2015.7.1.에 체결되었음에 비하여 위 표준재무상태표는 2014년도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작성된 것인 점, ② 표준재무상태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2014년도에 당기순이익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216,000,000원인데 비하여 피고 a의 소극재산은 121,148,000원이므로 피고 a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광명시 G 입야 28,760㎡ 중 피고 A의 지분 28,760분의 1,554.6
2. 부산 금정구 H 입야 14,198㎡ 중 피고 A의 지분 10,000분의 3,208 끝.